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1059

제출연월일 : 2024. 6. 27.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고하고"를 "이를 통보하고"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신고사항 등의 보고)"를 "(신고사항 등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고"를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2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를 "(무인도서 현황 등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구역 안에 무인도서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제출"을 "통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를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로 한다.

- 1. 증감 현황
- 2. 다른 법률의 적용 현황
- 제3조(「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보고)"를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을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조(「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도지사에 대하여"를 "시·도지사에게"로, "보고 를"을 "제출을"로 한다.

제41조제5항 중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를 "현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5조(「어촌·어항법」의 개정)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 제목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자료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을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를 "필요한"으로 한다.
- 제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 제7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 제8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9조(「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지역해양환경

기준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통보받은 지역해양환경 기준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 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6조의 개정규정, 제2조의 개정규정, 제3조 중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44조의 개정규정, 제4조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4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 •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	<u>이를 통</u>
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	보하고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	제26조(신고사항 등의 통보)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	
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받은 사항 등을 <u>보고</u> 하여야	<u>통보</u>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 하는 낚	
시어선업인 경우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그 신고받은 사항	
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u>보고</u> 를 받은	② <u>통보</u>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	<u> 통보</u>
야 한다.	<u>.</u>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29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제29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통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① -----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구역 안에 무인도서가 있는 경 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 정하는 무인도서에 대한 다음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통보----. 1. 무인도서 증감 현황 1. 증감 현황 2.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무 2. 다른 법률의 적용 현황 인도서 현황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통보----. 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
고) ① ~ ③ (생 략)	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	4
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5조의2에 따른 국가수산	
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	
력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	⑤
라 신고 또는 <u>보고</u> 를 받은 해양	<u>통보</u>
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	
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u>(보고)</u> ① (생 략)	제44조(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②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u>	<u>해양수산부장</u>

관에게 보고하고, 수산생물방역	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u>기관의 장</u> 및 관계 시·도지사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①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3
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	
경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①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u>시·도지</u>	② <u>시 • 도지</u>
<u>사에 대하여</u> 수산자원의 조사·	<u>사에게</u>
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u>보고를</u>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	5

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사전·사후영향조사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⑥·⑦ (생 략)
-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사용 료의 사용) ① (생 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u>다</u> .
⑥·⑦ (현행과 같음)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사용
료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통보</u>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해	제48조(자료제출 요구)
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	<u>시장·군수·구청장에게</u>
<u>여금</u>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필요한
<u>하거나</u>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
의 수립) ① ~ ⑤ (생 략)	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6
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거	
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u>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u>
	<u>가 된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사항 외에
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해당</u>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	제9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
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	6
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	
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	4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를 조	
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	
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	<u>통보</u>
야 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①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	②
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	
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	
경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u>이</u>	<u>o</u>]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해양수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해양수
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산부장관에게 해당 지역해양환
<u>다.</u>	경기준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
	양수산부장관은 통보받은 지역
	해양환경기준에 수정 또는 보완
	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
	도지사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해양환경종합조사) ① (생	제18조(해양환경종합조사)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해	②
양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	
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u> 통보</u>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